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151
----------	--------

제안년월일 : 2022. 11. 28.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운영 중에 있는 재단법인의 임직원을 마포구의회에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확대함.

-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 (안 제2조제6호)
-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의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 (안 제2조제7호)

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를 “「지방자치법」 제51조”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또는 위원회”로,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조기관중”을 “보조기관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속공무원중”을 “소속공무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의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u>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u>(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u>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u>관계공무원</u>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범위) <u>의회</u> 또는 <u>위원회</u>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u>관계공무원</u> 등의 범위는 다음 <u>각호</u>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구청장의 <u>보조기관</u>중 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3. 법 제126조 내지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u>소속공무원</u>중 구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자 5. (생략) <p><신 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51조----- ----- <u>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또는 위원회</u>----- ----- ----- <u>관계공무원 등</u>----- -----.</p> <p>제2조(범위) <u>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u> ----- ----- ----- ----- <u>각 호</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보조기관</u> 중 ----- -----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 4. ----- <u>소속공무원</u> 중 ----- ----- 5. (현행과 같음)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신 설>

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의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

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